

#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176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일자 : '95.10.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이 '95. 5. 16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,
-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## 2. 주요골자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(안 제3조)
-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함(안 제35조의2)
-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㎡에서 700㎡로 확대(안 제38조)
-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 함
  - 전기요금, 수도요금,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
  - (1급 관사에 한함 → 1, 2급 관사에 한함) (안 제55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35조 제1항중 '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'를 '시장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'로 하고 '공유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'를 '공유재산의 취득, 처분'로 하며 '변경계획을 작성하여'를 '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'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, 동조 제4항의 단서중 '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'를 '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'로 한다.

제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 2 (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)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(도로, 하천등)으로 취득 (보상취득)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8조 제1호중 '기타 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'를 '기타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'로 한다.

제55조 제5호 및 제7호,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5. 전기요금 (단, 1급.2급관사에 한함)
- 7. 수도요금 (단, 1급.2급관사에 한함)
- 8.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(단, 1급.2급관사에 한함)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 '제35조의 2'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례 공포후 3월이내 그 소관재산 관리관이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취득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